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
연 월 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작성되는 토지현황조사서와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조사·등록내용이 복잡하고,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조사·등록내용을 간소화 하고, 최신기술(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위치도를 작성하여 시각화하는 등 사업의 시행 전·후가 비교 되도록 조사·등록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 변경(안 제10조제1항 등)

지상경계와 관계없는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경계점 위치사진과 지적공부인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계점좌표 등을 경계점 등록기준, 형태, 위치 등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을 변경

나. 토지현황조사서 서식 변경(별지 제3호 서식)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토지현황조사서를 사전조사서와 현지조사서로 구분되도록 서식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20. ~ 9.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지목
4. 작성일
6. 경계점 번호 및 표지종류
7. 경계설정기준 및 경계형태
8. 경계위치
9. 경계점 세부설명 및 관련자료
10. 작성자의 직급 성명
11. 확인자 성명 및 확인일자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현황조사서 또는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토지현황조사서 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는 각각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토지현황조사서 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로 본다.

토지 현황(사전)조사서

토지소재지							
토지에 관한 사항	구분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토지대장						
	등기부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권리자	권리내용		기간	등기일자	비고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전세권						
	기타						
건축물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						비고
	구분	용도	층수 (지상/지하)	건축 면적 (㎡)	건폐율 용적률	소유자 성명 주소	
					%		
			/		%		
			/		%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국토계획 용도지역·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						
	도시계획시설						
토지특성 및 개별공시지가	이용현황	지형	현실지목		도로 조건	형상	
	기준일				공시지가(㎡당)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일	사전조사일				확인일		
	사전조사자				확인자		

토 지 현 황 (현 지) 조 사 서

현황사진	위치도(0000년 00월 00일 촬영)
------	--

토지특성	이용현황	지형	현실지목	도로 조건	형상

	구분	용도	층 수 (지상/지하)	이용현황	거주(경작)현황
건축물에 관한 사항					

	방 위	경계형태	경계 폭(m)	연접토지현황	연접토지와의 관계
현황경계 등 조사내용	동				
	서				
	남				
	북				
	기타 특이사항				

		조사일			
조사내용	현지조사			조사자 의견	
	확인자				

지상경계점등록부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작성일	

위치도(0000년 00월 00일 촬영)

경계점 번호	표지 종류	경계설정 기준	경계형태	경계위치	세부설명	관련자료(파일)

작성자	소속 /직급(직위)	확인자	직 급	
	성 명		성 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지상경계점등록부)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 청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지상경 계점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상경계점등록부) ① --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u>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 용 지목</u>	3. <u>지목</u>
4. <u>면적</u>	4. <u>작성일</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u>토지이용계획</u>	6. <u>경계점 번호 및 표지종류</u>
7. <u>개별공시지가</u>	7. <u>경계설정기준 및 경계형태</u>
8. <u>측량일 및 검사일</u>	8. <u>경계위치</u>
9. <u>측량자 및 검사자</u>	9. <u>경계점 세부설명 및 관련자 료</u>
10. <u>경계점 위치 사진</u>	10. <u>작성자의 직급 성명</u>
<u><신 설></u>	11. <u>확인자 성명 및 확인일자</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u>경계점좌표</u>	<u><삭 제></u>
14. <u>경계점 위치 설명도</u>	<u><삭 제></u>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